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3. 10. 16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박병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 이유

○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 내용

○ ‘다문화가족’ 용어 정의 정비 (안 제2조제1항)

○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‘인력 확보’ 사항 추가

(안 제3조제2항)

○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수행사업에 ‘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·운영’ 및 ‘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’사항 신설

(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)

- 띄어쓰기 수정,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조문 정비
(안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, 제5조, 제7조제1항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지난 4월, 정부는 ‘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’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‘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’를 비전으로 하는 「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(2023~2027)」을 심의·의결한 바가 있음¹⁾.

(국정목표 3)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

- 국정과제48 :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
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

- 실천과제3: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

- 이번 기본계획은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등 가구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학습·진로 등 ‘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’에 중점을 두고 있음.
-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을 넘어섰고 취학 연령대인 만 7~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빠르게 증가²⁾하고 있는 반면,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낮아지고³⁾ 학력 격차는 심화⁴⁾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.

1) ‘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’(2023. 4. 관계기관 합동)

2) 만 7~18세 자녀 수: ’17년 10.7만 여명 → ’21년 17.5만 여명 (63% 증가)

3) 학교 적응도: ’15년 4.53점 → ’18년 4.33점 → ’21년 4.23점

- 충청북도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지난 해 기준 7,425명으로,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, 특히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4.3%로, 총 평균 3.2%¹⁾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 충북 다문화학생 증가 현황 (2019~2022) >

구분		2019	2020	2021	2022
전체	전체	171,598	176,540	175,840	173,975
	다문화	5,503	6,746	7,182	7,425
	비율	3.3%	3.8%	4.1%	4.3%

자료제공 :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

- 이에 따라, 본 개정 조례안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‘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·운영’과 ‘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’사항을 신설하고, 이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와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아낸 ‘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’라는 ‘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’방향에 부합함.
- 또한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5조제5항²⁾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, 이 시책에 법 제4조에서 명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

4)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: '18년 18%p → '21년 31%p
('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.5%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.5%)

1) 2022년 기준 전국 초·중·고 학생 5,284,527명 대비 다문화학생 168,645명 : 3.2%
(출처 : 충청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세부계획)

2) 제5조(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)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교육 현황 및 아동·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현황과 인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, 변화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,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

- ‘다문화가족 학생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**안 제2조(정의)**에서는 제1항제2호와 제3호를 ‘*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**’과 ‘**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**’으로 변경하였음.
- 이에 따라, 같은 항 제1호에서 ‘**다문화가족지원법**」 제2조1)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‘**결혼이민자**’에 대한 정의를 제2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하고, ‘**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**」 제2조제1호2)에서 ‘~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’으로 제한한 ‘**외국인주민**’의 범위를 ‘**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**’으로 확대, 정착주기의 차이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다문화가족 까지 정의에 포함한 것임.

1)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**결혼이민자**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“**결혼이민자등**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**결혼이민자**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3. “**아동·청소년**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2)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**외국인주민**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**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**을 말한다.

- 안 제3조(기본계획 수립)에서는 제2항제3호에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중‘재원확보 사항’을‘재원 및 인력확보 사항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(위원회 설치)에서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‘~사람을’을 ‘~사람 중에서’로 변경해, 교육감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현재 제정되어 있는 타 시·도 교육청의 해당 조례 중 유사 조항에 위원 임명 및 위촉과 관련해 13개 교육청*이 ‘~ 사람 중에서’로 규정하고 있음.

* 13개 시·도교육청 : 강원, 경기, 경남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서울, 세종, 인천, 전남, 제주, 충남

-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 규정한 안 제10조(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)에서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‘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·운영’ 및 ‘다문화 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’ 사항을 신설함.
- ‘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·운영’의 경우,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국에 대한 언어교육과 함께 역사·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국 방문 등 문화 교류프로그램부터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,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해,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정체성 확립과 부모-자녀 간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울

감과 자아존중감 하락¹⁾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<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지원 >

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다문화 아동·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

전달체계	다문화가족 지원체계	각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	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
성장단계	양육 및 성장	교육 및 학교적응	각종 자원 연계
중·고등학생 진로탐색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이중언어 교육·인재DB 연계 •청소년 진로컨설팅·상담 강화 •대학생 멘토링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진로체험 정보제공(꿈길) 및 진로교육(진로탄탄) •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 (학교, 교육지원청 등) •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•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청소년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•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확대 •다문화 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·확대 •폴리텍 다문화고등학교 운영 •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

○ 특히, 세종과 전남교육청 등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²⁾, 부모국의 역사·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‘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³⁾’의 경우, 정부가 지난 9월 26일 ‘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’에서 「이주배경학생(외국인, 국내출생, 중도입국 학생) 인재양성 지원방안」을 통해, 다문화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⁴⁾하지 않도록 **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학교**

1) 우울감 경험: `18년 18.8% → `21년 19.1% / 자아존중감: `18년 3.87점 → `21년 3.63점

2) - 세종교육청 : ‘다문화학생 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’(23.7.17~21., 베트남, 학생 20명 참여)
 - 전남교육청 : ‘조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’(23.8.7~11., 일본 / 베트남, 학생 각 15명 / 20명 참여)

3) **다문화 밀집학교(교육부 기준)** : 재학생 100명 이상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30% 이상인 학교

4) `21학년도 다문화가족 학생 학업중단률 : 초 0.68 / 중 0.78 / 고 2.05 (전체학생: 초 0.58 / 중 0.54 / 고 1.55)

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음.

< **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계획 (23.9.26.,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)** >

- (밀집학교 여건개선) 다문화 밀집학교(전체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30%이상)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집중지원('24년~)

구분	한국어학급	지원인력 등	방과후과정
일반학교	필요시 설치 권장	-	-
다문화 밀집학교	설치 적극지원	한국어학급당 1명 배치지원	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

- (지역 내 다문화교육정책 허브 구축) 교육지원청에 **다문화교육지원센터**를 설치하고 지역자원과 학교 간 **매칭, 학부모교육, 학습자료** 등 지원

*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부터 우선설치 추진('24년, 5개 시범운영)

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- 이에 따라, 해당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현재 **충북 도내 다문화 가족 학생 밀집학교 2개교**¹⁾에 대한 한국어위탁교육, 다문화 맞춤형 강사 지원, 정서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.

□ **다문화 밀집학교* 현황**

* 재학생 100명 이상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% 이상인 학교

연도	(단위: 개교)				합계
	90% 이상	70% 이상 90% 미만	50% 이상 70% 미만	30% 이상 50% 미만	
'22년	1	6	9	55	71
'21년	1	5	7	42	55
'20년	1	5	6	33	45

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- **안 제15조(실태조사)와 제16조(협력체계 구축)**도 신설해, 도내 다문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

¹⁾'21학년도 다문화가족 학생 대학진학률 : 40.5% (전체학생 대학진학률 : 71.5%)

1) 전국 71개 학교 중 충북 도내 2개 학교 포함 (청주 1개교, 진천 1개교)

반영해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뿐 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노력을 명시함.

- 이밖에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‘해마다 연초에 필요한’ 기본 계획 수립하도록 하던 표현을 ‘매년’으로 변경하고, 제4조제1항 조문 내용 중 ‘교육 지원’을 ‘교육지원’으로 수정하였으며, ‘충청북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’로 ‘위원회’ 약칭 표현을 명시해, 이후 조항에서 10회 정도 반복 사용되는 ‘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’를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함.
- 이어 제5조에서도 ‘~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’ 표현을 ‘~ 다음’으로 간결화하였고, 제7조제1항에서는 ‘연1회’와 ‘3분의 1이상’을 ‘연 1회’와 ‘3분의 1 이상’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 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과 다문화가족 밀집학교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- 이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과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임.

- 특히,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인 해외 체험·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과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문 내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국어 어문규범에 부합하도록 변경함. 또한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